

# 「2025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화랑, 공·사립미술관 및 대안공간의 미술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3월 5일(수), 17:00 까지**
- 지원기간 : 2025년 ~ 2027년 다년(3년) 지원 \*2025년 사업기간 : 지원 기간 중 4월 ~ 10월(총 7개월)
- 지원대상 : 전시공간 운영 및 작가 육성이 가능한 화랑, 공·사립미술관 및 대안공간
- 지원규모 : 70단체 내외(작가 수 기준 약 86명)
- 지원내용 : 전속작가 시장 진입 지원비 및 홍보비 지원

##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단체 (화랑, 공사립 미술관 대안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3년 동안 작가와 계약을 체결·유지할 단체(화랑, 공·사립미술관, 대안공간)</b></li> <li>① [업태: 소매업/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 미술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랑의 경우, 연매출 100억 이하로 한정,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li> <li>*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등록증, 대안공간(비영리)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li> </ul> </li> <li>②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li> <li>③ 최근 2년간(2023~2024년) 연 1회 이상 전시(내·외부, 페어 참여 등) 개최한 단체</li> </ul>						
	전속 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화랑, 공·사립 미술관, 대안공간과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 국적 작가</b></li> <li>-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li> </ul>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개 내외 단체(작가 수 기준 약 86명)</li> <li>- 선정단체 사업수행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단체(작가 수 기준 5명) 선정 예정</li> <li>• 1개의 단체 대상 전속작가제 지원 규모는 작가 수 기준 최대 3명까지 가능</li> <li>• 전속작가 시장 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작가 1명당 1,500만원(국고) 지원</li> </ul>						
지원내용	지원금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장진입 지원비</td> <td>• (시장 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td> </tr> <tr> <td>홍보 마케팅비</td> <td>•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평론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인쇄 •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td> </tr> </tbody> </table>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 (시장 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	홍보 마케팅비	•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평론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인쇄 •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 (시장 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							
홍보 마케팅비	•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평론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인쇄 •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랑 등) 국고보조금 총 지원금액 내 자부담 23.07% 편성(1작가 당 450만원), 사업 수행 시 작가 당 비평 1개 이상 진행 필수</li> <li>• (작가) 지원기간 중 연간 10개 이상 신작 제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 화랑 등에 제출</li> <li>• (작가&amp;화랑 등) 전속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기간 중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전시개최(개인·단체·페어참가 등)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공·사립미술관 및 대안공간은 단체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li> </ul> </li> </ul>
	다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 '25년 AB전속작가 지원 → 26년 C전속작가 추가 지원 시 e나라도움 공모신청 필수</li> <li>• '25년 지원 기간(4월~10월)이 종료된 이후, 2차('26년), 3차('27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해야 함 (※ 별도 안내 예정)</li> <li>• '25년 지원 기간(4월~10월)이 종료된 이후, 화랑·작가 간 전속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공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지원이 종료됨</li> <li>•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연도 추가 모집 예정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025 전속작가제 선정단체는 3년 연속 지원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b>다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당시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연속 지원 혜택 불가 (2025-2027 연속 지원 혜택은 25년 선정 전속작가와만 계약을 유지하였을 때 한함)</li> <li>- 연도별 지원 기간 종료 이후, 필수 이행사항을 하지 않은 단체</li> </ul> </div>

## ■ 공모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경로	• 상단 검색엔진 > 2025 전속작가제 입력 > 검색 > 공모사업 클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가입 시 단체회원 가입</li> <li>• 지원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본사업은 "예치형" 사업</li> <li>• 신청 기간 중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li> <li>•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장애신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이용</li> </ul>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3월 5일(수) 17:00까지</b></li> <li>-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li> <li>-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li> <li>②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li> </ul> </li> <li>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등록증, 대안공간(비영리)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li> </ul> </li> <li>④ 전속계약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b></li> <li>-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도장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li> </ul> </li> </ul>	e나라도움 첨부 제출

## ■ 심사 및 결과발표

구분		내용										
심사	방법	• 외부 전문 심의위원 5인 내외 구성, 서류심사 진행										
	기준	세부항목	항목(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단체의 (조직)운영 역량 *정량적 평가(30)</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가(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td> <td>Y/N (10)</td> </tr> <tr> <td>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td> <td>Y/N (10)</td> </tr> <tr> <td>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td> <td>Y/N (10)</td> </tr> </tbody> </table>		구분	평가(배점)	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	Y/N (10)	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	Y/N (10)	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	Y/N (10)	[단체] 신청단체 사업수행 역량 <b>(40)</b>
		구분	평가(배점)									
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	Y/N (10)											
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	Y/N (10)											
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	Y/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육성계획의 적절성(전속계약 기간, 지원 방향 등) *정성적 평가(10)</li> </ul>		[작가] 전속작가의 예술성 성장 가능성 <b>(6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의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li> <li>기존 미술시장에 없는 참신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li> <li>작가의 예술성 및 한국미술 기여도, 장르·지역·참여 수 등 종합 고려</li> <li>(우대사항) 회화 외 조각, 설치, 미디어 등 장르 활동 시 우대</li> </ul>												
일정	심사일정	• 2025년 3월 2주 ~ 3주 (예정)										
	결과발표	• 2025년 3월 4주 (예정)										
	공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공모 신청·접수	심의·선정	교부·사업수행	정산·사업신청
2월 1주~3월 1주	3월 2주~4주	3~4월 중	~'2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지원 신청</li> <li>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의</li> <li>총 70명 기준 작가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석</li> <li>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실적 보고</li> </ul>

## ■ 문의 및 주요사항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관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 시각유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 02-708-2298, 2098-2932 / (이메일) arte@gokams.or.kr</li> <li>- 유선 문의는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li> </ul> </li> <li>e나라도움 : 고객센터 1670-9595</li> </ul>
----	--

<b>지원 제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대표, 작가</li> <li>• 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li> <li>•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li> <li>• 선정 단체 대표와 계약 체결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li> <li>•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li> <li>•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li> <li>•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li> <li>•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li> <li>•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li> <li>•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li> <li>•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li> <li>•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마~아목에 해당하는 단체</li> <li>•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li> </ul> </li> <li>•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b>지원 불가 항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항목 제외 모든 항목 *지원신청서 예산편성 기준 참고</li> <li>• 지원사업자의 경비 : 단체 대표·직원 전문가활용비(비평, 번역 등), 사무실 임차료 등 단체 운영경비</li> <li>•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li> <li>• 기타 사항: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li> </ul>
<b>유의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li> <li>-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li> <li>- 타 통장(대표 명의 포함)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li> <li>- 임직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거래 금지</li> <li>-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li> </ul> </li> <li>-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li> <li>•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함</li> <li>•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li> <li>• 총 보조금(지원금)의 23.07% 자부담(1작가 당 450만원) 및 증빙 필수</li> <li>•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li> <li>•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li> </ul>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선정단체 및 작가 계약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센터가 주관하는 조사 응답 필수(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전속계약 유지율,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자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실무자 참석 필수

- 선정 단체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전속작가 대상 전시 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 센터에서 정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연속지원(2026년~) 선정 중단]**

- 보조사업자의 미정산(정해진 마감일 까지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자 및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자)

- 미반납(부정수급 및 미정산 등으로 센터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부정수급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센터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그 외 e나라도움 및 센터 안내 절차 미진행 등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미술관 분류 기준 적용

연번	소재지		구분	기관명
	시·도	시군구		
1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3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4	충북	청주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5	서울	중구	공립	DDP디자인뮤지엄
6	서울	강서구	공립	겸재정선미술관
7	서울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8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9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분관)
10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구립미술관분관)
11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예술창작터 (성북구립미술관분관)
12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3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14	경기	이천시	공립	경기도자미술관
15	경기	여주시	공립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6	경기	고양시	공립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17	경기	안산시	공립	김홍도미술관
18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19	경기	성남시	공립	성남큐브미술관
20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미술관
21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
22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23	경기	여주시	공립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24	경기	오산시	공립	오산시립미술관
25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6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27	인천	미추홀구	공립	송암미술관
28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29	강원	강릉시	공립	강릉시립미술관
30	강원	인제군	공립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31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32	강원	고성군	공립	진부령미술관
33	강원	춘천시	공립	춘천미술관
34	충북	충주시	공립	관아갤러리
35	충북	진천군	공립	진천군립 생겨판화미술관
36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37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대청호미술관)
38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한국공예관
39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40	충남	천안시	공립	천안시립미술관

41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42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43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44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미술관
45	전북	순창군	공립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
46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47	전북	완주군	공립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48	전북	정읍시	공립	정읍시립미술관
49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미술관
50	전남	신안군	공립	1004섬수석미술관
51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52	전남	목포시	공립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3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54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55	전남	곡성군	공립	아산조방원미술관
56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57	전남	신안군	공립	저녁노을미술관
58	전남	광양시	공립	전남도립미술관
59	전남	함평군	공립	함평군립미술관
60	전남	화순군	공립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61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62	광주	북구	공립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63	광주	남구	공립	양림미술관
64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미술관
65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솔거미술관
66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67	경북	청송군	공립	군립청송야송미술관
68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립미술관
69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70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71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72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73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희미술관
74	경남	진주시	공립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75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76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77	울산	중구	공립	울산시립미술관
78	부산	해운대구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79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현대미술관
80	제주	서귀포시	공립	서귀포시기당미술관
81	제주	서귀포시	공립	소암기념관
82	제주	서귀포시	공립	이중섭미술관
83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84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85	제주	서귀포시	공립	제주추사관
86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